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6.

김 장 관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김장관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봉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제8항제2호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범위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 별지 제7호서식 뒤쪽에서는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48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장관, 이진환, 정순옥
남현주, 강한곤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공제사업이 2025년 신규 개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봉사단의 활동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회 가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른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에 공제회비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 제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8항제2호)
- 나.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입한 공제회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다. 보상청구서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7호서식 뒤쪽)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2호 본문 중 “보험가입비”를 “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보험금을 제외한”을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운영 등) ① ~ ⑦ (생략)</p> <p>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u>보험가입비</u>. <u>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u></p> <p>3. ~ 7. (생략)</p> <p>⑨·⑩ (생략)</p>	<p>제8조(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보험가입비 또는 공제회비 <단서 삭제></u></p> <p>3. ~ 7. (현행과 같음)</p> <p>⑨·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p>	<p>제15조(재해보상) ① ----- ----- ----- ----- ----- -----.</p> <p>----- 단</p>

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
 --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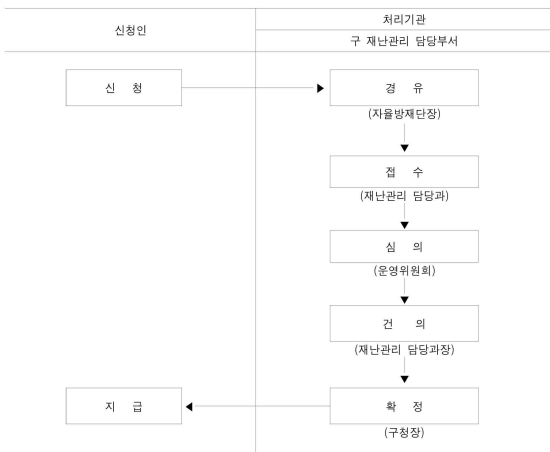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달서구 의료운 구민 심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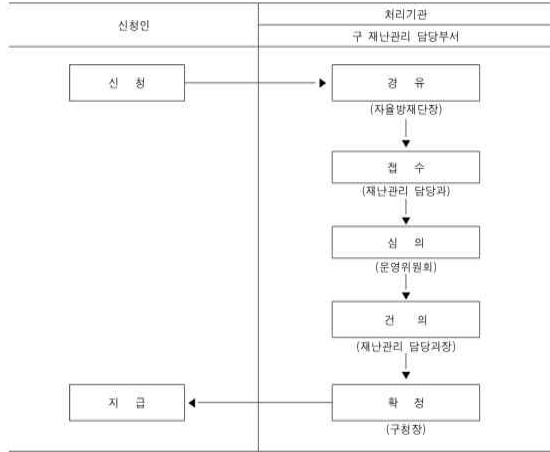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달서구 의료운 구민 심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